

4.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25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기획조정실장)
-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31일
- 상정일자 :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19년 11월 21일),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기획조정실장 김정기)

□ 제안이유

-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에서 지방공사·공단 임원의 정수를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,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82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9조는 임원 중 12명 이내의 이사, 1명의 감사를 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임원의 수를 대구도시공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.
- 조례안 제35조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8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- 상기 조례안을 제외한 기타 모든 규정들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곽영구)

○ 조례안 개정의 목적은

- ▶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구도시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.) 임원의 정수 상한선과 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이익 처분 조항의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○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▶ 안 제9조에서는 법 제58조제1항⁵⁾과 달리 ‘사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’을 두는 것으로 공사 임원 정수의

5) 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(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)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됨에 따라 임원의 정수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관으로 정하도록 정비하였음.

- ▶ 안 제35조에서는 법 제82조⁶⁾의 개정(2015.12.15.)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음.
- ▶ 그 밖에 조례 전반에 걸쳐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한자식 또는 일본식 용어와 문장구조를 정비하였음.
- ▶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공사의 권한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⁷⁾의 위반 소지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법률 적합성을 높이려는 것으로,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.
- ▶ 그러나, 공사를 대상으로 현행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은 없었으며, 향후에는 상위법의 제·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 음

6) 제82조(과태료)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(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검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7)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수정안 요지

○ 없 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